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85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7,180,65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20,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4,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1. 28. 원고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으로 [redacted]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였으며, 2018. 9. 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032,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망인의 사망일(취득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7,180,65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20,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4,4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 부과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을 전액 납부한 후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이하 '이 사건 납부확인서'라 한다)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그 납부내역에 취득세 등의 본세와 각 가산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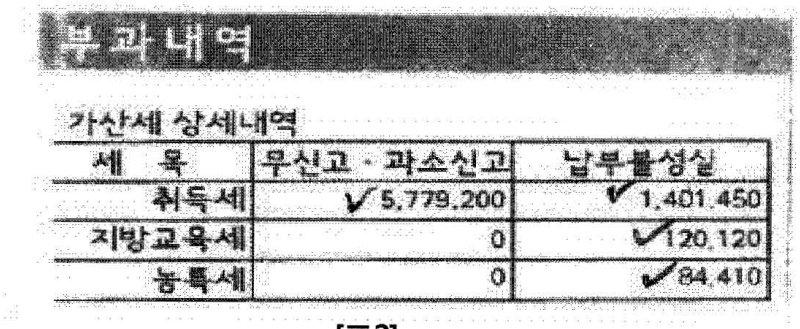

부과내역

가산세 상세내역

세 목	무신고 ·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취득세	✓5,779,200	✓1,401,450
지방교육세	0	✓120,120
농특세	0	✓84,410

[표2]

세 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취득세	43,273,560	0	2019.03.26
(지방)교육세	3,213,800	0	
농특세	2,146,860	0	
계	48,634,220	0	48,634,2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부확인서에는 취득세 등 본세와 각 가산세가 통합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가산세의 종류나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 있는 납부확인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2)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조세부과 처분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납세고지서'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이를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를 납부한 이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내용에 따라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절차로 나아갔다고 봄이 명백하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부확인서에도 취득세 등 본세 및 각 가산세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법률상 근거 내지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언으로 증여받았는데, 유증은 상속과 같은 사인행위이며 그 법률효과도 동일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역시 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유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효과가 동일한 상속과 유증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법률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속과 그 실질이 동일한 직계비속에 대한 유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유증과 상속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므로, 이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하 논의의 편의상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이라고 표현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가 유증의 형태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005조),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그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는 것으로서,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67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상속과 유증은 구분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유증의 경우 유언 형식을 취함으로써 수증자가 증여자의 사망 전에 유증받을 재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달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은 기간을 부여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 유증, 사인증여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리해석에도 벗어난다.

③ 입법자가 상속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달리 취급한 것은 앞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본 바와 같이 상속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차별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고, 이는 '직계비속에 대한 유증'과 상속의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대법원 역시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과 같이 취득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다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한이 60일로 개정되었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참조),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앞서 본 지방세법 규정 내용 및 유증과 상속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유증을 통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로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망인의 사망일인 2018. 9. 4.부터 60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